

상대를 움직이는 논증의 기술 (Ⅱ)

I. 유비(類比) 논증

1. 유비 논증 : 빠른 사건 파악과 강한 인상 남기기
2. 유비 논증을 구사할 때 유의할 점

II. 정의(定義) 논증

1. 정의 논증 : 소모적인 논쟁 방지
2. 정의 논증을 구사할 때 유의할 점

III. 프레임 논증

1. 프레임 논증 : 상황을 바라보는 생각의 틀을 결정
2. 프레임 논증 구사 형식 예

IV. 좋은 논증을 위한 기준

1. 수용성
2. 관련성
3. 충분성

V. 맺음말

상대를 움직이는 논증의 기술 (Ⅱ)

논증은 말 자체의 설득력을 배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의 자료』 제9호에서는 여러 논증의 형태 중 개별적인 여러 사실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일반화 논증’ 및 규칙적인 연관성을 띠는 사실관계로부터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는 ‘인과관계 논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주장 내용을 널리 알려진 상황 등에 빗대어 논증하는 ‘유비 논증’, 정의 자체가 논증의 근거가 되는 ‘정의 논증’, 상황을 인식하는 틀의 설정·전환을 통해 논증하는 ‘프레임 논증’에 대해 이들 논증의 개념과 다양한 활용 사례를 함께 설명하는 한편, 이어서 논증을 평가하는 종합적인 세 가지 기준 -수용성, 관련성, 충분성- 에 관해 기술하면서 지난 호부터 다룬 「상대를 움직이는 논증의 기술」편을 갈무리하고자 한다.

I. 유비(類比) 논증

유비 논증이란 익숙하게 알고 있거나 쉬이 수긍할 수 있는 상황과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주장을 논증하는 방식이다.¹⁾ 두 대상이 가진 유사한 특성을 근거로 다른 특성도 유사하리라는 결론을 내리는 논증으로, 예컨대 X와 Y가 공통적으로 a, b의 성질이 있는 경우에, X가 c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Y도 c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논증하는 것이다. 특정 상황, 사례 등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지난 호에 살폈던 일반화 논증²⁾과 유사하지만, 일반화 논증에서는 한두 개의 예만으로는 결론을 뒷받침할 수 없었던 반면에 유비 논증에서는 하나의 사례만으로 충분하다. 또한 일반화 논증을 위해서는 결론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사례일 것이 요구됐으나 유비 논증을 위한 사례는 주장 내용과 적절한 유사성만 갖추면 족하고 결론과 같은 범주에

1) 서영진, 2012, “TV 토론 담화 분석을 통한 논증 도식 유형화,” 『국어교육학연구』 제43집 (국어교육학회), 313쪽.

2) 주장을 뒷받침하는 직·간접 경험 사례나 통계 자료 제시를 통하여 이러한 각각의 개별 사실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일반화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대표성을 갖춘 다수의 근거 제시가 중요한 논증 형태이다.

속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일반화 논증과 유비 논증은 차이가 있다.

1. 유비 논증 : 빠른 사건 파악과 강한 인상 남기기

90년대 말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회장 빌 게이츠가 미국 법무부 요구에 반대하며 펼친 유비 논증을 통해 이 논증의 강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³⁾ 1998년 당시 MS의 윈도우98은 당시 컴퓨터 운영체제의 90%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MS는 이와 같이 독점적인 지위를 갖는 윈도우98에 자사의 인터넷 검색 소프트웨어인 익스플로러(IE)를 끼워 팔고 있었다. 이에 대해 미국 법무부는 MS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서, MS에 대해 IE를 윈도우98의 초기화면에서 삭제하거나 아니면 경쟁사인 넷스케이프의 인터넷 검색 소프트웨어를 윈도우98에 함께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빌 게이츠는 윈도우98에 IE와 넷스케이프를 함께 설치하라는 법무부의 요구를 두고 “마치 코카콜라 6개들이 한 상자에 펩시콜라를 3병씩 섞어서 판매하라는 것과 같다”라고 거부해, 법무부와 MS 간의 협상은 결렬됐다.⁴⁾

미국 법무부와 빌 게이츠 중 누가 더 타당한지는 논외로 하고, 여기서는 빌 게이츠의 논증을 통해 알 수 있는 유비 논증의 강점을 살펴보겠다. 일단 IE, 넷스케이프 등 컴퓨터 분야에 문외한인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유비 논증을 통하면 사건을 빠르고 간명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비 논증은 청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데도 효과적인데, 예컨대 ‘법무부 요구’와 ‘빌 게이츠가 제시한 유비 상황’(“코카콜라에 펩시콜라를 끼워 팔라는 누가 봐도 이상한 요구”) 간의 유사성을 인정한 청자가 유비 논증의 강한 각인으로 말미암아 법무부 요구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을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비 논증은 설득 상황을 잘 파악해서 이를 유사한 상황에 적절하게 빗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고 추가 조사 등을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아, 논거 구성을 위한 노력 등

3) MS와 법무부의 협상 결렬 과정은 『동아일보』, 1998. 5. 20. 6면, 홍은택, “美정부-MS社 전면전,”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052000209106010&ed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8-05-20&officeId=00020&pageNo=6&printNo=23883&publishType=00010> (검색일: 2014. 5. 9.)을 참조했다.

4) MS와의 협상 결렬로 미국 법무부는 윈도우98의 시판 금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MS사의 반독점행위를 인정하여 MS사의 분할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MS가 항소했는데, 2심에서는 반독점행위는 여전히 인정되었으나 분할명령은 기각되었다.

이 간이하다는 것도 장점이다.⁵⁾

2. 유비 논증을 구사할 때 유의할 점

다만 다른 논증법에 비해 높은 수준의 사고력이 요구되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논증이 아니라는 것은 유비 논증의 약점이다. 유비 논증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쉬운 사례들 중에서 현재 쟁점과 관련 있는 것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많은 배경 지식과 일정 수준 이상의 사고력을 갖추어야만 시의적절한 구사가 가능하다.⁶⁾ 그렇지만 유비 논증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게 하고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데 효과적이어서, 이를 잘 구사할 줄 알면 설득에 특이된다. 적절한 유비 논증을 위해 유념할 몇 가지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두 사례가 충분히 비슷한가?

유비 논증에서는 주장 내용과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골자이므로, 이들의 유사성이 해당 결론을 도출하기에 충분한지를 가장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들이 모든 면에서 완전히 동일하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결론을 도출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반드시 같아야 한다.

가령 다음 사례는 다수의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만 결론 도출에 충분한 유사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성공한 유비 논증의 경우이다. 1973년 미국 인디언족 추장인 애덤 노드웰은 로마에 도착하여 1492년의 콜럼버스와 같이 “나는 오늘을 ‘이탈리아 발견의 날’로 선언한다. (중략) 이탈리아에 와서 콜럼버스와 똑같은 권리로 당신네 나라를 발견했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⁷⁾ 노드웰의 이러한 퍼포먼스는 오랫동안 사람들

5) 한편 빌 게이츠의 유비 논증에 대해 적절한 논증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미국 법무부 요구 중에는 윈도우98에 IE와 넷스케이프를 함께 설치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했지만, 미국 법무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논지의 핵심은 윈도우98에 IE를 끼워 파는 행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법무부의 주장은 “코카콜라사에서 연 치킨 가게가 치킨 시장의 90%를 장악하는데, 코카콜라사가 이 치킨 가게에서 치킨을 팔 때 코카콜라를 끼워 팔아 펩시콜라를 먹고 싶은 선택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여서 빌 게이츠의 유비 논증 및 이를 통한 주장 내용은 부당하다는 반박이 있다[최훈, 2010, 『변호사논증법』 (웅진지식하우스), 265-266쪽].

6) 서영진, 2012, “상호 교섭적 논증 교육의 내용 구성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72쪽.

7) 애덤 노드웰의 유비 논증 사례는 Weston, A., 2010, 『논증의 기술』, 이보경 역(필맥), 64-69쪽을 참조했다.

이 터를 잡고 살아온 나라에 느닷없이 나타난 낯선 사람이 그 나라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이다. 물론 1492년의 상황과 1973년의 상황은 여러 면에서 다르다. 아메리카 대륙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반면 이탈리아는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었고, 콜럼버스는 탐험가였지만 노드웰은 탐험가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이점들이 유비 논증을 통한 노드웰의 역설적인 주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는 못한다. 노드웰의 유비 논증에서 핵심적인 유사성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정착하여 살고 있었던 땅에 다른 사람이 도착한 것’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유비 논증을 구사할 때는 내가 비교 대상으로 제시하는 상황이 내가 하려는 주장과 핵심적인 부분에서 동일한지를 살펴야 한다.

(2) 두 사례 간에 중대한 차이점이 없는가?

두 사례 간 핵심적인 부분의 동일성 검토에 막막함을 느낀다면, 반대로 이들 간에 중대한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살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실전에서 유비 논증의 적합성을 신속하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아래는 정부가 댐 건설을 강행하려는 A지자체와 이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예시이다.

논증활용예시

A군에 댐을 건설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를 강행하려는 A지자체 측과 이에 반대하는 A군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들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댐 건설을 옹호하는 A지자체 측이 내세운 근거 중에 하나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 일부를 절단할 수 있는 것처럼, 전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집단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유비 논증이었다. 이에 A군 주민들은 더욱 격앙되었고, 갈등은 깊어졌다. 이는 잘못된 유비 논증이 오히려 갈등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경우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정부로서는 A지자체가 제시한 유비 논증의 오류를 이성적으로 지적하여 A군 주민들의 심화된 갈등 감정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희생의 대상과 목적인 ‘A군과 국가’를 ‘신체 일부와 신체 전체’에 빚댄 유비 논증은 비록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상징했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을지라도 중대한 차이점을

간과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신체의 일부’는 신체 전체에 완전히 종속되어 의사결정의 주체도 아니지만, ‘개인이나 집단’은 독립된 의사결정권자로서 국가에 종속된 존재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희생의 감수를 요구할 수 있는가. 또는 이것이 가능하다면, 국민은 이를 어느 정도까지 수인(受忍)해야 하는가가 핵심 논제인 사안에서 종속성 유무가 아예 상이한 대상을 유비의 대상으로 하는 논증은 부적법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중대한 차이점을 간과한 해당 유비 논증의 잘못을 지적하여, 소모적인 감정의 충돌로 더 나아가는 것을 막고 합리적인 논의 분위기로 재설정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3) 주장을 위한 유비 논증인가?

한편 유비 논증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혹시 해당 유비가 단순히 설명만을 위해 사용된 것은 아닌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⁸⁾ 유비에는 어떤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논증적 유비와 설명을 위해 사용하는 설명적 유비가 있는데, 전자는 주장 입증에 위한 증거 제시의 차원에서 유비를 활용하지만 후자는 설명하는 내용을 익숙한 것에 비유하는 수준에서 유비를 사용할 뿐으로, 양자는 해당 유비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엄격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앞서 본문에서 소개한 유비는 모두 주장 입증에 위한 논증적 유비로, 위 유비 논증이 적합하기 위해서는 상기한 것처럼 주장 내용과 그 비교되는 대상이 중대한 부분에서 차이가 없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동일해야 한다. 하지만 반면에 설명적 유비에서는 이러한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지 않는다. 예컨대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동굴 속에서 사물의 그림자만 보는 사람들은 일상경험의 세계에 자신을 국한시키는 사람들이고, 햇빛 속으로 나와 사물 그 자체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일상의 이면에 놓인 불변하는 실재를 추구하는 철학자들”)는 본질에 대한 플라톤의 사유를 ‘설명’하려는 것이지, ‘논증’하려는 것은 아니어서, 논증적 유비의 엄격한 기준을 들이밀며 이것이 잘못된 유비라고 반박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비의 목적을 구별하는 것은 논의의 경제성을 위해 의미가 있다.

8) 주장을 위한 유비논증에 관한 두 단락의 내용은 Cavender, N. and H. Kahane, 2013, 『논리와 현대 화술』, 김태은 역(도서출판 씨아이알), 155-156쪽을 인용·참조했다.

II. 정의(定義) 논증

정의 자체를 논증의 근거로 삼는 방식이다. 저마다 다른 가치관과 경험 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개념이나 사안에 대해 내리는 정의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논쟁에서 각자가 사용하는 개념 등의 정의에 관해 검토하는 일은 정의의 불일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미연에 막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1. 정의 논증 : 소모적인 논쟁 방지

개념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소모적인 논쟁을 부를 수 있다. 근래 사회 이슈이던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갈등 양상의 한 단면을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⁹⁾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두고 인터넷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양심적이어서 군대에 안 가고 나머지는 비양심적이어서 군대에 간다’는 비난조의 게시글도 있었는데, 이는 ‘양심’에 대한 정의가 불일치한 데서 비롯한 무익하고 소모적인 논쟁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양심적/비양심적’이라고 할 때의 ‘양심’의 의미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도덕적 의식’(예, “잃어버린 돈을 돌려주다니 그 사람은 양심적이군”)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에서의 ‘양심’은 헌법 제19조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과 궤를 같이 하여 도덕적 의식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개인적인 신념’이란 뜻으로 쓰였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갈등 감정만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사실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는 많은 갈등 사례에서 해결의 단초를 제시해줄 수 있는 주요한 작업이다. 가령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되는 사건 중에도 이런 경우가 적지 않은데, 예를 들면 해당 기사의 명예훼손에 관해 판단함에 있어서 기사에 보도된 신청인을 공인으로 볼지를 논의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때는 ‘공인’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기도 한다. 논쟁의 장에서는 우선적으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념 정리는 대립 당사자의 상이한 정의로 인해 갈등이 불거진 경우 갈등을 없애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논쟁의 대상을 일치시켜 최소한 무익한 논쟁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9)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내용은 최훈(2010), 104-105쪽을 참조했다.

2. 정의 논증을 구사할 때 유의할 점

(1) 명료하고 분명한 언어가 사용되었는가?

정의를 내릴 때 애매모호한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정의 내리기를 통해 생각을 조직화하고 핵심적인 유사성과 차이점을 가려내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¹⁰⁾ 명료하지 않고 불분명한 단어로 이루어진 정의를 통해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애매한 단어를 피하여 혼동을 방지하는 것이 좋은 정의의 시작이다.

(2) 설득적 정의가 사용되었는가?

설득적 정의란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내린 정의’이다.¹¹⁾ 가령 사형제도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사형제도는 힘없는 범죄인에 대한 국가 주도의 합법적인 보복 살인행위’라고 정의하는 반면,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무고한 생명을 파괴한 잔인무도한 반사회적 범죄인에 대한 가장 적절한 형벌’이라고 정의하는데, 이것이 설득적 정의의 예이다.¹²⁾ 발화자는 설득적 정의를 통해 상대방의 동조를 촉구한다. 설득적 정의는 여러 논증 방법 중 하나일 뿐이므로 설득자가 이를 주장의 논거로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나, 상대방이 그 설득적 정의가 하나의 논증 방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아무런 의문 제기나 비판도 없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양 당사자의 갈등을 중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논쟁에 설득적 정의가 쓰였는지를 파악하여 논의의 시작이 애초에 불공정하다면 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설득적 정의는 이러한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일방 당사자가 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인정하게 되면 나중에 이를 재론하는 것은 쉽지도 않고 번거롭기 때문이다. 아래는 낙태 시술의 허용 입법에 대한 논증 자리에서 설득적 정의가 사용된 예로, 회의를 주재하는 자의 조정자 역할이 드러난 사례이다.

10) Weston, A. (2010), 288쪽.

11) 설득적 정의에 대한 내용 및 사례는 최훈(2010), 104-109쪽을 참조·각색했다.

12) 김지현 외 6인, 2009, 『논리와 비판적 사고 2.0』 (글고운), 52쪽.

논증활용예시

낙태시술 허용 입법을 논하는 자리이다. 한쪽에서 “태아에 대한 살인인 낙태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의가 정정되지 않고 계속 회의가 진행된다면 낙태시술 제한 완화를 주장하는 측에게 회의는 원천적으로 불공정한 시작일 수밖에 없다. 이 정의는 낙태의 잔인한 면을 드러내어 정의 자체로 낙태를 반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립적으로 회의를 주재할 필요가 있는 측에서는 회의가 객관적인 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태아에 대한 살인(殺人)’이라는 낙태의 정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두산백과에 의하면 낙태란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이고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포유동물의 태아를 미숙한 상태에서 강제로 적출하는 일”이다. 갈등을 중재하는 입장에서는 갈등 당사자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문제가 없는지 살필 줄 알아야 한다.

Ⅲ. 프레임 논증

프레임이란 어떤 일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범주인데, 이러한 프레임의 설정 또는 전환을 통하여 논증하고 상대를 설득하는 방식을 가리켜 프레임 논증이라 한다. 가령 ‘침대는 과학입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내세운 에이스 침대 광고는 소비자로서 하여금 디자인 위주로 침대를 선택한 기존 시각에서 매트리스의 과학적 기술력에 눈을 돌리도록 만든 프레임 논증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다. 프레임 논증은 논거의 가시적인 제시를 통해서가 아니라, 근원적·무의식적 차원에서 해당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존의 논증 방법과 차이가 있다. 경제심리학¹³⁾에서는 똑같은 상황을 어떤 프레임을 통해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인간의 행동패턴을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라고 부르기도 한다.

13) 경제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 등을 심리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1. 프레임 논증 : 상황을 바라보는 생각의 틀을 결정

마크 트웨인의 소설 『톰 소녀의 모험』에도 프레임 논증의 전환을 통한 설득 장면이 등장한다.¹⁴⁾ 어느 날 톰은 그의 이모로부터 담벼락 페인트칠을 모두 끝내야만 놀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일꾼에게 도움을 청해 봐도 소용이 없는 데다 친구들이 자신을 놀려댈 생각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톰은 묘안으로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데, 그것은 페인트칠을 ‘신나는 놀이’로 비치도록 한 것이었다. 톰은 친구인 벤이 옆에 와서 소란스럽게 노는데도 페인트칠에 푹 빠져 전혀 알아채지 못한 척하고는, 일 때문에 놀러가지도 못하겠다고 놀리는 벤에게 놀란 어투로 “뭐가 일이지?”라고 되물으며 “애들이 울타리를 칠할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있는 줄 아냐?”고 진지하게 말했다. 상황은 금세 역전되어 벤은 자신이 가진 사과를 모두 톰에게 주면서 제발 칠해보게 해달라고 부탁하기에 이르렀다. 동네의 다른 친구들도 벤과 마찬가지로 페인트칠을 하게 해달라고 조르는 상황이 벌어졌다. 톰의 이모는 장난질이 심한 톰을 제지하려고 그에게 페인트칠이라는 ‘일’을 시킨 것이었지만, 톰은 ‘즐거운 놀이’라는 전혀 새로운 프레임을 이러한 상황에 대입시켜 친구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프레임 논증은 상대로 하여금 현실을 다른 방향에서 보도록 유도하여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

2. 프레임 논증 구사 형식 예

(1) 단어의 활용을 통한 프레임 논증 유도

‘단어의 활용’을 통해 프레임을 설정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이다. 캘리포니아 대학 언어학과 교수인 조지 레이코프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기존 주장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새로운 틀의 정립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 두뇌에서는 그 단어와 결부된 프레임이 작동한다”¹⁵⁾라고 하여 단어의 활용을 통한 프레임 논증에 대해 말한 바 있다.

14) 이 장면은 Twain, M., 2010, 『톰 소녀의 모험』 (문학동네), 25-33쪽을 참고했다.

15) Lakoff, G., 2006,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삼인), 18쪽.

단어의 활용을 통한 프레임 설정은 중요한 외교적 순간에도 활용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으로 인해 2006년 9만 명의 이스라엘인이 대테러 장벽 인근의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한 일이 있었다.¹⁶⁾ 당시 이스라엘 외교부는 위 이주를 어떤 단어로 표현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했다. 처음에 검토한 ‘철수(Retreat)’라는 용어가 이스라엘 당국의 결정이 나약하고 이주에 따른 새로운 경계선이 영구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어 우려됐기 때문이다. 결국 분쟁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소유권 주장에 불리하지 않으면서 불거진 마찰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적합한 ‘재배치(Realignment)’라는 용어로 결정됐다. 단어 하나도 상대방의 사고 틀 형성에 결정적일 수 있으므로 설득의 순간에는 단어 선택에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단어 선택을 통한 프레임 논증의 전환은 조정 현장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아래는 이혼을 원하는 남편과 남편에 대한 증오감으로 이혼에 반대하는 아내 사이의 이혼 조정 사례이다.¹⁷⁾

논증활용예시

아내에게 전 재산을 주고서라도 이혼을 원하는 남편이 있었다. 이혼조정이 열리고, 조정위원은 아내에게 “당신이 모든 재산을 ‘가질 수 있는데’ 이혼에 합의하는 것이 어떻느냐?”라고 물어보았지만, 아내는 이를 거부했다.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조정위원은 아내가 가진 프레임 변경을 고려해볼 수 있다. 조정위원은 아내에게 “당신은 남편의 모든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데 이혼에 합의하겠느냐?”라고 바꾸어 물어보았다. 아내가 ‘(자신이) 재산을 갖는다’라는 프레임 대신 ‘(남편의) 재산을 빼앗는다’라는 프레임을 갖게 되는 경우, “빼앗는다”라는 말에서 연상되는 증오와 박탈의 부정적인 프레임이 아내의 태도에 변화를 주리라 기대할 수 있다.

(2) 말의 순서나 주어의 변경 등을 통한 프레임 논증 유도

말의 순서나 주어의 변경을 통해서도 프레임 논증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러한 형식

16) 이 단락은 Cavender, N. and H. Kahane(2013), 236쪽을 참고했다.

17) 아래 사례는 Diamond, S., 2010,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8.0), 137-138쪽을 참고했다.

의 프레임 논증은 대화 당사자의 관심 대상을 전환하는 데 특징이 있다. 또한 앞서 소개한 단어 선택을 통한 프레임 논증보다 활용면에서 훨씬 수월하기도 하다. 예컨대 “저는 서울에 갑니다. 어디로 가세요?”와 “어디로 가세요? 저는 서울에 갑니다”는 말의 순서를 바꾸었을 뿐이지만 상대방에게 각 다른 프레임을 연상시킨다고 하는데, 전자는 대화의 프레임을 ‘화자’에 머무르게 하는 반면 후자는 대화의 프레임을 ‘상대방’으로 전환시킨다.¹⁸⁾ 누군가를 설득할 때는 화자의 관심이 화자 자신이 아니라 설득의 상대방에게 있음을 알리는 것이 당연히 유리할 것이다.

대화의 주어를 변경하여 조정 당사자의 관심 방향을 바꾸는 것도 유용하다. 아래는 자녀양육권 조정에서 조정위원이 주어의 변경을 통해 프레임 전환을 하는 방법과 관련된 것이다.¹⁹⁾

논증활용예시

자녀양육권 조정에서는 조정 당사자의 프레임이 ‘배우자’에서 ‘자녀’로 변경되는 대화 구사가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조정 당사자가 “저는 자녀양육권을 원합니다”라고 말하면 조정위원은 이를 “당신의 자녀가 당신과 중요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고 있군요”라고 바꿔 말하는 것이 좋고,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2주일에 한 번씩 자녀를 방문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면 조정위원이 이를 다시 말할 때는 “자녀는 2주일에 한 번씩 아빠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라고 하는 것이 조정 성립에 효과적이다. 또한 만일 남편이 “저는 단독 양육권을 원하고, 당신은 두세 달에 한 번씩만 자녀들을 뵈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면 조정위원은 “즉 당신의 자녀가 당신 부부 둘 다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기회를 갖게 하는 건 어려울까요?”라고 수정해서 말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이와 같은 대화의 주어 변경은 자녀양육권 조정의 당사자인 부모가 그들의 관점이 아니라 아이의 관점에서 양육권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 더불어 부모의 관심보다 아이의 복지를 제일 우선순위에 놓는 효과를 낳는다.

18) 최문찬, 2012, CEO를 위한 행동경제학, http://www.bcci.or.kr/_Data/Board/seminar/a69c730639341b465782a0748a7b2e5e.pdf(검색일: 2014. 5. 13.)

19) 아래 단락을 Saposnek, D. T., 1983, “Strategies in child custody mediation: A family systems approach,” *Conflict Resolution Quarterly*, issue 2, pp. 42-43을 참고했다.

IV. 좋은 논증을 위한 기준

지금까지는 각각의 논증법에 대해 살폈다면 마지막으로 좋은 논증을 만드는 개괄적인 기준을 간략히 알아보겠다.²⁰⁾ 논증의 종류는 일반화·인과관계·유비·정의·프레임 논증 외에도 다양한 만큼 이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바람직한 논증의 요건을 알아두면 설득력 있는 논증 구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수용성

좋은 논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제 사실이 참이어야 한다. 이것을 ‘전제의 수용성’이라 하며, 말하는 사람 또는 인용의 출처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수용성 여부를 살필 수 있는데, 아래는 이를 판단하는 대략적인 기준이다.

수용성 판단기준²¹⁾

- 개인의 증언 진술인 경우
 - 진술자는 평소에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진실했는가, 과장이 심했는가?)
 - 진술자의 진술 상황이 정상적인 상태인가? (심리적, 물리적 상황이 불안정하지는 않는가?)
 - 진술자의 관찰 상황이 정상적인 상태였는가? (정확한 관찰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는가?)
- 전문가의 증언 진술인 경우
 - 진술이 전문가의 해당 분야에 속하는가?
 - 진술이 전문가의 개인 이익과 관련이 없는가?
- 매체 진술인 경우
 - 진술의 출처가 어디인가? (전문서적인가, 교양서적인가? / 공영방송인가, 상업방송인가? / 시사프로그램인가, 연예프로그램인가? / 시사저널인가, 연예저널인가? / 신문의 사실보도기사인가, 사설이나 칼럼인가? / 인터넷의 메이저 포털사이트의 게시글인가, 인터넷의 개인 블로그나 카페의 글인가?)

20) 바람직한 논증의 요건에 대한 내용은 김지현 외 6인(2009), 250-359쪽을 참고했다.

21) 김지현 외 6인(2009), 265쪽.

□ 기관 진술인 경우

- 해당기관은 신뢰할 만한가? (전문기관인가, 비전문기관인가?/ 국공립 기관인가, 사설 기관인가?/ 비영리 기관인가, 영리기관인가?/ 전문가로부터 자주 인용되는 기관인가, 아닌가?)

전제의 수용성을 판단할 때 하기 쉬운 실수는 논증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권위를 근거로 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발화자가 특정 분야에 저명하다고 하여 그가 하는 말 전부를 신뢰할 수는 없다. 예컨대 고명한 심리학 교수라고 해서 명예훼손 분야에 대해서까지 저명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관련성

각각의 전제가 사실이더라도 그 전제들이 결론과 관련이 없으면 좋은 논증이 될 수 없다. 주장 내용과 무관한 주장자의 성격, 직업 등 개인적인 특성을 이유로 그 주장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비판은 관련성이 결여된 경우이다. 특히 반론이 일어날 수 있는 원천을 비판함으로써 반론의 제기 자체를 불가능케 하여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원천봉쇄의 오류’는 전제의 관련성이 문제되는 잘못된 논증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예컨대 낙태를 반대하는 자에게 “당신은(남성은) 원치 않은 임신을 당해 보기도 했습니까?”라고 하는 발언²²⁾이나 노사협상에서 “당신은 임원이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라는 말²³⁾은 원천봉쇄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러한 원천봉쇄의 오류는 주로 상대방에게 어떤 집단의 구성원임을 부각시켜 그의 견해가 집단 구성원인 데서 발생한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반론 가능성 자체를 독단적으로 막아서 합리적 토론의 장벽이 된다.

3. 충분성

마지막으로 좋은 논증을 위해서는 결론을 지지하기에 전제가 충분해야 한다. 충분성 판단의 기준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근거가 양적으로 충분하고, 둘째 근거가

22) 원천봉쇄의 오류 정의 및 낙태 반대론자에 대한 발언 예시는 김지현 외 6인(2009), 343쪽을 인용하였다.
23) 최훈(2010), 217쪽.

질적으로 다양하며, 셋째 예상되는 반박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수의 전제만으로 결론을 도출하지 말 것, 다양한 측면의 전제를 제시할 것, 논증에 대해 예상되는 비판을 논증 속에 미리 제시하거나 적절한 대처를 준비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뜻한다. 충분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성급하거나 편향된 결론이 도출되거나 혹은 특정 주장의 거짓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장이 참이라고 하는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유비 논증, 정의 논증, 프레임 논증과 좋은 논증을 만드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유비 논증을 할 때는 두 사례 간의 유사성이 충분한지, 중대한 차이점은 없는지를 살피고, 정의 논증을 할 때는 명료한 언어로 구사되었는지, 일방에 치우친 설득적 정의가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프레임 논증 시에는 단어, 말의 순서, 또는 주어의 변경을 통한 프레임의 설정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수용성, 관련성, 충분성은 좋은 논증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 요건들로서 이 세 가지 기준은 논증이 어떤 형태인지를 불문하고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논증은 자칫 어렵고 지루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논증은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설득 요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논증은 건축에 비유하면 건물의 뼈대를 완성하는 골조공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골조공사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적 요소는 아니나, 골조공사가 소홀하면 튼튼하고 안전한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그러므로 논증은 설득에 능하고자 하면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임이 분명하다.